

‘City Tax(여행자체류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9
----------	-----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4일, 김현아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0일

다.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 ‘City Tax(여행자 체류세)’를 신설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함에도 각종 복지사업 수요로 인하여 세출 규모는 매년 증가 되고 있어, 지방재정은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어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또한, 자주재원 확충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서 재정자율권의 제약과 만성적 재원 부족이라는 악순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이제는 중앙정부가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도 프랑스 파리‘여행자 체류세’¹⁾ 사례와 같이 City Tax (여행자 체류세)’신설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특별시

1) 여행자 체류세 : 프랑스에서 체류하게 되면, 체류인에게 일반적으로 시청에 공고된 체류세를 내도록 요구 하는데 개인에 따라, 머무는 날짜에 따라, 고급숙소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 태 식)

- 본 건의안은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프랑스 파리의 ‘여행자 체류세’ 사례를 벤치마킹 및 신설하여, 지방세에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와 서울시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임.
- 대표적인 관광대국인 프랑스는 관광관련 세금으로 체류세(Taxe de Séjour) 제도를 두고 있음. 체류세(Taxe de Séjour)는 파리 시내의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입은 관광시설의 개발에 투자되고 있음.
- 최근 한류의 영향, 의료관광 및 MICE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관광 선진국 도시들이 실시하고 있는 ‘여행자 체류세’와 같은 조세의 도입은 서울시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사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지방의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으로서 ‘City Tax(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City Tax(여행자 체류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City Tax(여행자 체류세)’의 도입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으로,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고 생산자가 판매

후 수취가격을 낮추어 조세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조세의 부담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서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하게 되는 조세의 전가(轉嫁)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즉, ‘City Tax(여행자 체류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이지만, 여행객이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행자 체류세의 비용을 숙박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세의 전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형 숙박시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인 바,
- 이러한 발생가능한 숙박업소의 영업이익 감소 측면과, 제도신설에 따른 지방자치 재원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City Tax(여행자 체류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구조는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함에도 각종 복지 사업 수요로 인하여 세출규모는 매년 증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도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어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 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세 과세 사례 중, 현재 선진 유럽 등에서 부과하는 '시티텍스(City Tax)' 예를 들 수 있다.

“시티 텍스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관광세(tourist tax), 숙박세 (accomodation tax), 프랑스에서도 이태리처럼 숙박세(taxe de séjour)라고 한다.

관광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태리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시티텍스(City Tax)를 거두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대부분 도시에서 시티 텍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나 텍사스에서도 호텔세(Hotel Occupancy Tax)란 이름으로 시티텍스(City Tax)를 받고 있다. 시티텍스(City Tax)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기에 부과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人)·박(泊)·급(級)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즉, 호텔 등 모든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 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4인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체류하는 숙박일수 만큼 납부하며 숙박업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도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 발굴을 통한 세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프랑스 파리 ‘여행자 체류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City Tax(여행자 체류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에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